


2008. 5. 14(수) 10:00

 제147회 임시회(제2차 본회의)

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
관한 조례안 등 3건
[심 사 보 고 서]

거창군의회
(산업건설위원회)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
2.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
3.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

《의안번호 제2008 - 14호》

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
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8년 4월 25일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(산림환경과)
- 다. 회부일자 : 2008년 4월 29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년 5월 8일
- 마. 의안번호 : 제2008 - 14호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산림환경과장 김 삼 수)

가. 제정이유

-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기존 「거창군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의 내용 중 “가축분뇨” 관리에 대하여 「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를 별도로 제정하여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 보전에 기여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 -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주거밀집지역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일정구역을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
- 가축사육 허가절차를 규정함(안 제4조)
- 사육자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5조)
- 가축사육 허가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경과규정을 둠(안 부칙 제2조)
 - 「거창군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봄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(전문위원 : 서 종 진)

가. 이 조례안은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2007. 7. 27. 폐지되고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2007. 9. 28. 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시행 해 오던 「거창군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, 오수·분뇨분야는 「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」로 전부개정 할 계획에 있고

(상하수도사업소 소관), 축산폐수분야에 대하여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규정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임.

나.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(목적)와 제2조(정의)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이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필요조항임.
- 안 제3조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사항으로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서 군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에 맞게 가축사육의 제한규정을 둔 것으로 적법한 규정으로 보여짐.
- 안 제4조(허가절차 등), 안 제5조(사육자의 의무), 안 제6조(허가취소) 등은 이 조례제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- 이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 요지 : 생략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《의안번호 제2008 - 15호》

[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8년 4월 25일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(산림환경과)
- 다. 회부일자 : 2008년 4월 29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년 5월 8일
- 마. 의안번호 : 제2008 - 15호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산림환경과장 김 삼 수)

가. 개정이유

-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변경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현실에 불부합한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내용과 인용 조문번호를 변경함.
 -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→ 보조금(안 제4조)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15조 → 제94조
- 「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(안 제1조부터 5조까지, 제8조)
 - ~규정에 의한 → ~에 따른
 - 각호 → 각 호
 - 타 기금 → 그 밖의 기금
 - 내지 → ~부터 ~까지
-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사무분장에 맞게 개정함(안 제7조)
 - 자금출납 공무원은 환경관리담당주사 →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(전문위원 : 서 종 진)

- 이 조례는 「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해 낙동강수계물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2. 11. 22. 제정된 조례로, 그간 이 조례에 준용한 법조항 및 조문의 일부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맞게 개정하고, 또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크짐에 따라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“알기쉬운법령 만들기”사업내용에 맞게 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, 이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《의안번호 제2008 - 16호》

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8년 4월 25일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(상하수도사업소)
- 다. 회부일자 : 2008년 4월 29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년 5월 8일
- 마. 의안번호 : 제2008 - 16호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하 일 선)

가. 개정이유

-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하수도법」과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·시행(2007. 9. 28.)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규정함(안 제2조)
-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

- 중수도의 설치, 관리, 용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)
- 배수설비의 시공, 준공,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11조부터 제14조)
-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)
-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0부터 제22조까지)
- 분뇨 수집·운반, 처리수수료의 부과·징수 및 개인
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)
- 요금의 감면, 할인, 이의신청, 가산금 등에 관한 사항을
규정함(안 제26조부터 제30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(전문위원 : 서 종 진)

- 이 조례안은 「하수도법」 및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하수도법」으로 통합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종전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던 「거창군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, 축산폐수분야에 대하여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「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」를 별도로 제정하고(환경관리과 소관), 오수·분뇨분야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

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.

-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(하수관거)로부터 50m 내로 지정하였으며(안 제2조), 수도법에 중수도 부분이 하수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였고(안 제7조부터 제10조), 종전의 「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조례」에 있던 분뇨수집운반 대행 및 수수료부과·징수에 관한사항을 이 조례에 명시하였음(안 제23조, 안 제24조)
-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 환경부의 조례기준표준안을 기초하여 거창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 요지 : 생략
- 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